

#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9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송도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 경, 김경훈, 김규남,  
김길영, 김동욱, 김성준,  
김영철, 김용일, 김원태,  
김춘곤, 김형재, 남창진,  
민병주, 박철성, 서상열,  
아이수루, 유정인, 유정희,  
, 이상욱, 이영실, 이원형,  
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  
정준호, 홍국표 의원(26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8월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반지하 등 침수취약지역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 및 반지하 등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토록 하는 한편, 관리주체가 설치·운영하는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의 점검 권한을 부여코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.(안 제6조제1항제7호)
- 나. 시장으로 하여금 관리주체가 설치·운영하는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신설함.(안 제6조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시민의 책무)”를“(시민의 의무)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안전취약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(이하 “안전취약계층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와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
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·운영하는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 민의 책무)</p> 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<u>안전취약계층</u>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제6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운영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7. (생 략)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(시 민의 의무)</p> <p>제5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안전취약계층(이하 “안전취약계층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·운영하는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.</u></p>